

의안번호	2208037
의 퇴 인	윤후덕 의원
회 답 일	2025. 2. 7.
추계번호	25F06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면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별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면제)	○ 페로실리코크로뮴, 페로티타늄 등 16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무세로 전환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별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면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무세(無稅)로 변경하는 경우 관세 수입 감소가 예상됨
- 「관세법」 (이하 “법”) 별표에서는 철강 부원료에 대해 종류별로 2~8%의 기본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라 무세로 변경되는 철강 부원료 현황

(단위: %)

	구분			HS CODE	현행 기본관세율	개정안
1	코크스와 반성 코크스, 레토르트 카본	1. 코크스	가석탄에서 제조한 것	2704.00-1010	3	무세
			나. 기타	2704.00-1010	3	
		2. 반성 코크스		2704.00-2000	3	
		3. 레토르트 카본		2704.00-3000	3	
2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와 노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3801.30-0000	8	
3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7202.21-0000	2	
4	기타	1. 마제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		7202.29-1000	3	
		2. 기타		7202.29-9000	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7202.41-0000	
6	기타			7202.49-0000	2	
7	페로실리코크로뮴			7202.50-0000	2	
8	페로니켈			7202.60-0000	3	
9	페로티타늄과 페로실리코티타늄			7202.91-0000	3	
10	페로니오븀			7202.93-0000	3	
11	기타	1. 인철		7202.99-1000	3	
		2. 기타		7202.99-9000	3	
12	합금하지 않은 니켈		2. 기타	7502.10-9000	3	
13	티타늄의 껍, 가루	1. 껍		8108.20-1000	2	
		2. 가루		8108.20-2000	3	
14	노 용			8545.11-0000	5	

자료: 「관세법」 별표

- 개정안은 현행 기본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고 있는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며, 이에 따라 관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HS CODE¹⁾ 10자리까지 구분되는 하위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 HS CODE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동일군 내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동일 소분류 내 품목의 용도·기능별 분류), 그 이하는 세분류 내 세세분류를 표시하는 것으로, HS CODE 자릿수가 많아질수록 더 세분화된 품목을 의미

1) 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HS CODE 분류 예시]

HS	2	7	0	4	0	0	1	0	1	0
군별 구분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유물, 역청 물질, 광물성 왁스			코크스와 반성 코크스, 레트르트 카본		코크스		석탄에서 제조한 것			

- 그러나 HS CODE 10자리까지 구분된 품목별 관세 징수실적 자료가 없어 품목별 관세 징수실적 및 향후 관세 수입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업자 등이 신고한 수입신고서별로 관세를 징수하므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다양한 품목별 관세 징수액은 관리되지 않고 있음
 - － 참고로, 「관세통계연보」 및 수출입무역통계에서는 HS CODE 1~2자리(군별) 구분에 대한 관세부과액 통계만 제공

[표 2] 개정안 대상 품목의 HS CODE 군별 관세부과액: 2022년

(단위: 백만원, %)

HS CODE	품명	수입액 (A)	관세부과액 ¹⁾ (B)	부과율 (B/A) × 100
27	석유·석탄	223,281,135	3,215,860	1.44
38	화학공업품	11,470,135	137,105	1.20
72	철강	21,499,952	30,134	0.14
75	니켈	2,479,584	24,756	1.00
81	기타 비금속	1,734,248	32,024	1.85
85	전기제품	155,988,216	785,858	0.50

주: 1) 관세부과액은 환급금액, 체납액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입신고 시 관세부과금액으로 실제 관세징수액과 다름

자료: 관세청, 「2023 관세통계연보」, 2024.6.

- 한편,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에서 HS CODE 10자리까지 구분된 품목의 수입실적(달러 기준) 자료는 제공하고 있으나, FTA협정 등으로 적용 관세율이 다른 경우가 많아 실제 수입실적 대비 관세 징수율 정보 없이는 품목별 관세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 － 법 제50조에 따라 협정세율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하여 적용

[표 3] HS CODE 별 기본세율 및 협정세율 예시

(단위: %)

품목명		HS CODE	기본 관세율	FTA·WTO 등 협정세율
코크스와 반성 코크스, 레트르트 카본	코크스 가. 석탄에서 제조한 것	2704.00-1010	3	WTO협정세율: 5%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 1.5% 최빈국특혜관세: 0% 북한산: 0% FTA협정세율: 0~0.3% RCEP ¹⁾ 협정세율: 0~2.4%
티타늄의 괴, 가루	1. 괴	8108.20-1000	2	WTO협정세율: 5% 할당관세: 0% 최빈국특혜관세: 0% 북한산: 0% FTA협정세율: 0~0.2% RCEP ¹⁾ 협정세율: 1.7~2%

주: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참여

1. FTA협정세율 및 RCEP협정세율은 국가별로 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범위로 표시
자료: 관세청, 관세법령포털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